

지급명령신청서

채 권 자 주식회사 새봄미디어 (법인등록번호 110111-0000011)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00, 0층

대 표 자 이서준

채 무 자 주식회사 한빛커머스 (법인등록번호 110111-000001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00, 0층

대 표 자 김도현

청 구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음 각 기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금 4,400,000원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독촉절차비용

금 69,580원(내역: 송달료 67,680원, 인지대 1,900원)

청 구 원 인

1. 광고대행계약과 대금 약정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 3. 20. 온라인 광고 캠페인을 2026. 4. 1.부터 4. 30.까지 집행하고 대행비를 금 6,6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선금 2,2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4,400,000원은 결과보고서 전달 후 2026. 5. 1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광고 집행과 결과보고

채권자는 약정에 따라 검색광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관리 화면의 집행내역과 매체 리포트를 보관하였습니다. 2026. 5. 7. 채무자에게 결과보고서를 전자우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잔금의 발생과 미지급

채무자는 결과보고서 전달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약정 지급일이 지난 뒤에도 잔금 4,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2026. 5. 22.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채무자는 미지급 광고대행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광고대행계약서 또는 발주서 사본 1통
2. 선금 입금내역 및 세금계산서 1통
3. 광고관리 화면 집행내역 및 매체 리포트 1통
4. 결과보고서 및 전달 전자우편 1통
5. 잔금 지급 요청 메시지 1통

2026. 8. 7.

채권자 주식회사 새봄미디어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